

# 이사회 독립성 가이드라인

현대모비스는 이사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상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글로벌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성 요건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검증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
- ②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⑥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⑦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⑧ 회사 또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개인적인 거래 및 서비스 계약을 맺은 자
- ⑨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상기 요건 외에도, 이사회는 독립성 결정에 있어 국내외 환경과 이사와 회사의 제반 상황을 포함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